

	<b>보도 설명자료</b>	
	배포일시	2019. 11. 19.(화) / 총 1매(본문 1)
국토교통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거복지정책과장 김석기, 사무관 김병채</li> <li>• ☎ (044) 201-4504, 3360</li> </ul>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'19. 11.19(화) >

◆ “지금 사면 대박”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



-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
-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

□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.

□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어렵고,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,

○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\*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(금지행위) 제7호 :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(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같은 법 제48조제3호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직윤리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33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